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-146

제출년월일 : 2019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계약 체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업자 추가(안 제16조제1항제3호)

- 「전자정부법」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 추가

나.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 변경(안 제20조제1항)

-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7항에 따라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계약 체결기한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로명주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10. 10. ~ 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“없음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72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10”을 “2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	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. 1. 현행과 같음 2. 현행과 같음 3.「전자정부법」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
제20조(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제20조(광고사업계약 체결 등) ① ----------20 -----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하한종 (☎ 3153-9543)